

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8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8. 19) 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곽소득)

가. 제안이유

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국외 사적여행을 자율화하고 외국에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의 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함(안 제9조 제2항 및 제26조의2)
-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제3항)
-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(안 제22조 제4호)
- 형제자매 결혼시,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 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 근무파견시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 준용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양양 및 건문의 폭을 넓히려는 방안이고 또한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국외파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2명중 전원찬성)